

의안번호	2215767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9.
추 계 번호	25A7463

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사회적가치위원회 및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설치하며,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.6억원, 2030년 84.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5.7억원(연평균 71.1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추가재정소요 가운데 지방정부(17개 시·도의 지역추진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·운영) 부담은 2026년 6.1억원, 2030년 3.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.9억원(연평균 4.6억원)이상으로 추계됨
 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(중앙)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0.5	—	—	0.5	—	1.1	0.2
지역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4.6	—	—	4.6	—	9.1	1.8
(중앙) 사회적가치위원회(안 제8조)	0.1	0.2	0.2	0.2	0.2	0.8	0.2
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(안 제10조)	1.5	3.1	3.1	3.1	3.1	13.8	2.8
사회적가치추진단 설치(안 제9조)	33.9	65.4	69.8	74.6	79.7	323.4	64.7
평가결과에 따른 포상(안 제12조)	—	1.9	1.9	1.9	1.9	7.6	1.5
합계	40.6	70.5	75.0	84.8	84.8	355.7	71.1

주: 1.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2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3. 2026년 사회적가치위원회(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포함)의 민간위원 회의비 및 사회적가치추진단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/2(6개월분) 반영하였으며, 2026년 포상비용은 미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(기본계획의 수립)	○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- 법 시행 후 1~2회차 기본계획의 경우 3년 단위	의무규정
2	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 (지역추진계획의 수립)	○ 시·도지사는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- 법 시행 후 1~2회차 기본계획의 경우 3년 단위	
3	안 제7조 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
4	안 제8조 (사회적가치위원회)	○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 30명 이내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	
5	안 제9조 (사회적가치추진단)	○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둠	
6	안 제10조 (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)	○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	
7	안 제11조 (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)	○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	
8	안 제12조 (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(기본계획 수립)	○	-
2	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(지역추진계획의 수립)	○	
3	안 제8조(사회적가치위원회)	○	
4	안 제9조(사회적가치추진단)	○	
5	안 제10조(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)	○	
6	안 제12조(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)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6	안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×	○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7	안 제11조(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제정안 제7조 및 제11조의 경우 기존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재정소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동 추계에서 제외
-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·도 지역별 추진계획은 기존 유사도가 높은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유사도가 높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 용역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사회적가치위원회 및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
 - 위원회 위원 구성(30인)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을 동수로 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민간위원은 15인이 될 것으로 가정
 - (횟수)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 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고정될 것으로 가정
- 사회적가치추진단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실의 ‘지방화시대기획단’운영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사회적가치추진단의 인력구성은 ‘지방화시대기획단 정원기준(부처과건 55명, 전문임기제 11명)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 - 인건비는 ‘지방화시대기획단’ 전문임기제 평균 인건비(2026년 예산기준)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
 - 부처과건 공무원은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지급

- 기본경비는 ‘지방화시대기획단’ 최근 3년간의 기본경비 증가율(7.6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-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자산취득비는 설립 첫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
-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용기관 우수기관 포상 및 정부혁신 우수기관 포상에 지급된 비용의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연평균액(1.9억원)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- 다만,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 및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민간위원 회의비와 사회적가치추진단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/2(6개월 분)만 반영하며,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비는 2026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, 안 부칙 제2조)

-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5년 단위로 ‘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’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8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으로 추계됨
 -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2] 제정안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제목	발주처	수행기관	수행시기	금액
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	고용노동부	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	2022	47
제5기(2023~2026) 지역사회보장계획	경상북도	지방행정발전연구원	2022	43
주요 기업 사회적 가치 추진 현황 및 정책 지원 방안	산업통상자원부	한국표준협회	2020	55
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	보건복지부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9	88
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	국무조정실	한국행정학회	2017	38
평균				54

자료: 온-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단, 제정안 부칙 제2조는 동 법 시행 후 1회차 및 2회차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시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비용	54	-	-	54	-	108	2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지역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시·도 지역별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‘지역추진계획’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4억 8,200만원(연평균 2억 9,600만원)으로 추계됨
 -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비용은 17개 시·도에서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(4,4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지역추진계획 및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3년 주기 수립을 가정함
 - (연간 추가재정소요) 연구용역비 평균 4,400만원 × 17개 시도 = 7억 4,100만원

[표 4] 최근 수립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제목	발주처	수행시기	금액
제2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	부산광역시	2022	69
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	세종특별자치시	2022	38
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(2024~2028)	전라남도	2023	36
제4차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	광주광역시	2023	40
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	충청북도	2024	35
평균			44

자료: 온-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[표 5] 제정안의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역추진계획 수립 비용 (평균 연구용역비 X 17개 시·도)	741	-	-	741	-	1,482	296

주: 평균 연구용역비(44백만원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8,1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- (구성)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을 동수로 할 것을 규정. 따라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5인이 될 것으로 가정함
- (횟수)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¹⁾ 등을 고려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고정될 것으로 가정

1)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일당 20만원내(서면심사 15만원),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한하여 10만원 추가, 사전 자료수집·현지조사·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pp. 150~151)

- (연간 추가재정소요) 민간위원 15인 × 30만원 × 연 4회 = 1,800만원

[표 6] 제정안의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	9	18	18	18	18	81	16

주: 2026년은 1/2(6개월분) 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(안 제10조)

- 제정안에 따라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3억 7,700만원(연평균 2억 7,500만원)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은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음. 추계를 위해 제8조 사회적가치위원회와 동일 조건(민간위원 15명, 연 4회 개최, 회의수당 30만원)을 전제로 17개 시·도에 설치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- (연간 추가재정소요) 연평균 민간위원 회의비 1,800만원 × 17개 시·도 = 3억 600만원

[표 7] 제정안의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(사회적가치위원회 회의비 X 17개 시도)	153	306	306	306	306	1,377	275

주: 2026년은 1/2(6개월분) 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사회적가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)

- 사회적가치추진단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단가 등 산정

- (인건비)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현재 ‘지방시대기획단’ 전문임기제 11명(정원기준)의 직급별 평균 인건비(2026년 예산기준)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(3.0%)을 적용하여 산정

[표 8] 지방시대기획단 인력구성(전문임기제) 및 직급별 평균 인건비 현황: 2026년 예산 기준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전문임기제 가급	전문임기제 나급
인원(A)	2	9
1인당 연봉액(B)	121	93
인건비 (=A×B)	247	837

주: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성과급,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. 다만, 6급 이하는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도 포함됨

자료: 지방시대기획단 답변자료

- (기본경비) 기본경비는 지방시대기획단 최근 3년간 기본경비 증가율(7.6%)만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9] 지방시대기획단 기본경비 현황: 2023~2025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기본경비	4,052	4,485	4,689	7.6

자료: 지방시대기획단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자산취득비) 기관설립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2026년 1인당 자산취득비 4,980천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자산취득비는 전체 정원 66명(부처 파견 55명, 전문임기제 11명) 반영
-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23억 3,700만원(연평균 64억 6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0] 사회적가치추진단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	540	1,111	1,145	1,179	1,214	5,189	1,038
기본경비	2,522	5,426	5,837	6,279	6,755	26,819	5,364
자산취득비	329	—	—	—	—	329	—
합 계	3,391	6,537	6,982	7,458	7,969	32,337	6,467

주: 1.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2. 2026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/2(6개월분) 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바.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(제11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총 7억 5,600만원(연평균 1억 8,900만원)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

-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포상 및 정부혁신 우수기관 포상에 지급된 비용의 최근 3년(2023~2025년) 연평균 수준인 189백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단, 2026년은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11] 제정안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우수기관 포상 현황: 2023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2024	2025	연평균
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	205	205	186	199
정부혁신 우수기관 포상	180	180	180	180
평균	193	193	183	189

자료: 행정안전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12] 제정안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포상금 지급 비용	-	189	189	189	189	756	189

주: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2026년은 포상금 미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